

제목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초빙

채용유형 교수 기관종류 4년제대학

모집기간 2015/11/12 - 2015/11/19 근무예정지 서울

관련전공분야

상세채용분야/인원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2015-270 호

2016년도 상반기 교수초빙 홈페이지 정정공고

- 서울시립대학교는 장애인 지원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

A. 초빙분야 및 일정**1. 초빙분야 및 인원**

구분	대학	학부.과	초빙분야	인원	분야별 지원자격	
전임 교원 (18명)	정경 대학	행정학과	행정학 및 정책학	1		
		경제학부	보건경제	1		
	경영 대학	경영학부	재무관리		1	- 영어강의 가능자 우대
			마케팅		1	- 영어강의 가능자 우대
			인사조직매니지먼트 (전략적 조직행동론, 조직이론, 노사관계, 경영컨설팅, 중소벤처 창업경영 및 기업가 정신)		1	- Global consulting firm 및 Local consulting firm 경력 겸비자 우대 - 경영컨설팅 실무 경력자 우대 - 국제인적자원관리 강의 가능자 (중국, 동남아 등)
	공과 대학	토목공학과	지반공학		1	
			구조공학		1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전력전자 및 전기기기		1	
		신소재공학과	에너지재료 또는 금속재료		1	- 재료전산모사 및 공학수학 강의 가능자
	인문 대학	철학과	윤리학		1	
		중국어 문화학과	중국어학		1	
	자연 과학 대학	환경원예학과	원예식물식품학		1	- 산업체 및 산업체 연구소 경력자 우대
물리학과		계산물리		1		
도시 과학 대학	조경학과	융합환경계획		1		
	환경공학부	기후변화대응 환경공학		1		

예술 체육 대학	음악학과	작곡전공	1	- 석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 소유자 - 컴퓨터음악 강의 가능자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상해재활	1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첨단녹색도시개발학과)	도시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1	- 영어강의 가능자 - 국제개발협력실무 경험자 우대

◎ 정정사항 : 중국어문화학과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 정정

대학	학부.과	초빙분야	인원	분야별 지원자격
인문대학	중국어문화학과	중국어 교육	1	중국어 강의 가능자

↓

대학	학부.과	초빙분야	인원	분야별 지원자격
인문대학	중국어문화학과	중국어학	1	- 지원자격 삭제

※ 학교 내부사정으로 중국어문화학과 초빙분야와 지원자격을 정정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일정

- (1) 인터넷 접수기간 : 2015. 11. 12(목) 10:00 ~ 11. 19(목) 17:00(한국시간 기준)
 - (2) 부속서류 제출기간 : 2015. 11. 18(수) 10:00 ~ 11. 19(목) 17:00(한국시간 기준)
 - (3) 접수처 : 대강당
- ※ 우편접수방법은 뒷페이지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참고

3. 심사결과 확인

- (1) 단계별 심사결과 : 2015. 12. 28(월) 18:00 이후 교수초빙 홈페이지(<http://recruit.uos.ac.kr>)에서 개별 확인
- (2) 최종 심사결과 : 2015. 12월말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B. 지원자격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구 및 교육 경력 연수 4년 이상인 자
(붙임'교육 및 연구 경력 인정범위 및 환산율'참고)
3.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경영학부 지원자는 임용예정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단,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을 조건으로 하며, 미취득시 임용을 취소.
※ 음악학과는 석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 소유자
4. 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5.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이(접수마감일까지의 게재실적에 한함 : 2012. 11. 20 ~ 2015. 11. 19) 아래 계열별 실적요건을 충족한 자.
 - ① 인문·사회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박사학위논문 포함)
 - ② 자연·공학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박사학위논문 포함)
 - ③ 예체능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200% 이상 혹은 발표회 (전시회 포함) 200% 이상(최종학위논문 포함)
 - ④ 설계분야(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설계창작활동 실적 200% 이상(최종학위논문 또는 최종학위작품 포함)

※ 연구실적 접수 산출과 관련해서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붙임 1) 참조

- 붙임 1)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 1부.
- 2) 교육 및 연구 경력 인정범위 및 환산율 1부.

[붙임 1]

◎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

□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구분						
1. 인정범위						
가. 인문·사회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최종학위논문						
나. 자연·공학계열 :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최종학위논문						
다. 예체능계열 및 설계분야 : 발표회, 전시회,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최종학위논문						
라. 설계분야 :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최종학위논문, 설계창작활동						
마. 전문실무경력분야 : 전문실무경력,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최종학위논문						
2. 학술논문 구분						
가. 국제저명학술지						
○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선정한 SCI(E), SSCI, A&HCI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에서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Proceedings (개정 2010.5.7)						
○ 공간정보 분야 : Elsevier사의 GEOBASE에 수록된 학술지 가운데 OECD 국가에서 발간된 학술지 (개정 2010.5.7)						
나. 국내저명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개정 2010.5.7)						
□ 연구실적의 환산율						
1.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단위: %)						
		구분	단독	2인 공저	3인 공저	4인 이상 공저
학술논문	국제저명학술지	200	140	100	60	
	국내저명학술지	100	70	50	30	
학위논문	박사	200	-	-	-	
	석사	100	-	-	-	
2. 발표회, 전시회 (예체능계열)						
분야	연구실적	배점(%)	분야	연구실적	배점(%)	
1. 미술	1. 국제전,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50	2. 음악	1.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개인작곡발표회 1회	100	
	가. 입선 1회	100		2. 국내외에서 인정된 비중 있는 협연,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 주역 1회	100	
	나. 특선 이상 1회	200		3. 국내외에서 인정된 전문연주 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작곡 분야)	100	
	다. 대상	50		3. 공통	1.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활동 분야의 훈장 1회	200
	라. 국제전 출품 1회	50				
	2. 공인(미술협회등록)된 전시회	100				
	가. 개인전 1회	50				
	나. 2인전 1회	50				
	다. 기획전, 단체전 1회	25				
	3. 지역규모 공모전 및 공인 (미술협회등록)된 단체전의 공모전	25				
가. 입선 1회	50					
나. 특선 이상 1회	70					

4.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가. 출품 1회					
* 음악분야 실적은 음악학과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한다.					
3. 설계창작활동 (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설계분야)					
분야	연구 실적	배점(%)	분야	연구 실적	배점(%)
1. 시공된 작품	1. 국제 수상 2. 국내 수상	200 100	2. 프로젝트	1. 국제 설계경기입상 2. 국내 설계경기입상 3. 전시회 출품 4. 전문지 게재 작품	200 100 70 70
* 설계경기입상 실적의 배점은 당선작인 경우에는 배점의 100%를 인정하고, 당선작이 아닌 입상작은 배점의 70%를 인정한다.					
* 전시회출품은 해당학부.과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한다.					
* 전문지란 건축도시조경 전문지 및 출판물 등록을 필한 작품집을 뜻한다.					
* 설계창작활동의 참여자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은 학술논문의 국내저명지 환산율을 준용한다.					
4. 전문실무경력분야(법학, 국제도시)					
분야	근무 경력			배점(%)	
법 조	1.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의 개업기간			6개월마다 20%	
도시인프라 및 국제협력	1. 도시인프라분야 및 국가협력분야의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6개월마다 20%	
* 배점은 20%단위로 인정하며, 분야별로 합산할 수 있다.					

[붙임 2]

◎ 교육 및 연구 경력 인정범위 및 환산율

관련규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 고시

교육 및 연구 경력 인정범위 및 환산율

경력 내용	환산 인정율(%)
가. 교육 및 연구 경력 인정범위 <input type="radio"/> 연구실적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input type="radio"/> 교육경력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	
나 교육경력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	100
다. 연구경력1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1호 <input type="radio"/>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라. 연구경력2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2호 및 교과부 고시 제2조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규정 제4조제1항 제2호)	100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고시 제2조)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마.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3호 및 교과부 고시 제3조	30~70(10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고시 제3조)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60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50
	(단, 주당 5시간 미만은 30%, 주당 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100%를 넘지 못한다.)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30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50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70
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4호 및 교과부 고시 제4조	70~10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고시 제4조)	70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3.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70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70
4.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70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0
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70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70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70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70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 한 경력	70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70

C. 심사절차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평정영역 : 석사/박사학위 취득 학부·과 또는 전공 40점, 최종학위논문과 초빙분야 일치도 40점, 최종학위 이후 연구경력 20점
- 선정인원 : 기초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총점 100점 가운데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전공적격자로 선정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 연구실적물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가. 연구실적 등 심사

- 평정영역 : 총 배점 70점(단 음악학과는 50점)
 - 연구실적 55점, 자기소개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15점
 - ※ 음악학과는 연구실적 40점, 자기소개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10점
- 세부심사 기준 : 세부심사기준은 해당 학부·과별로 정함
- 선정인원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를 선정(다만, 실기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여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나. 공개발표심사

- 평정영역 : 총 배점 20점(단 음악학과는 40점)
 - 연구 또는 실기 능력 10점, 교육 능력 10점
 - ※ 음악학과(작곡)는 실기능력(작품평가) 20점, 교육 능력 20점
 - 공개발표심사에는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생이 참가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발표의 내용, 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선정인원 : 연구실적심사조서와 공개발표심사조서의 점수를 합산한 후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

3. 면접심사 : 지원자의 교육자적 인성 등에 대한 심사

- 평정영역 : 총 배점 10점
 - 교육자적 인성 심사 10점
- 당해 대학의 학장(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당해 학부·과장(대학원 부원장)이 평가하며, 면접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행한 평가결과를 평균하는 방법에 의함.

D.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인터넷 접수

- (1) 접수기간 : 2015. 11. 12(목) 10:00 ~ 11. 19(목) 17:00(한국시간 기준)
- (2) 접수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초빙 홈페이지(<http://recruit.uos.ac.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원
- (3) 제출 목록(교원임용지원서 입력 및 전공내역서 등 업로드)
 - 가. 교원임용지원서 1부.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 입력
 - 나. 전공내역서 1부.
 - 홈페이지 지원서입력 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 다. 연구실적목록 1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2. 11. 20 ~ 2015. 11. 19) 연구실적만 기재
 - 홈페이지 지원서입력 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지원마감일까지의 게재실적에 한함(게재예정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목록에 기재한 학술(학위)논문 또는 기타 연구실적 중 대표실적 3편을 양식 대표실적란에 순위별로 기재(질적평가용), 접수마감 후 대표실적 교체나 순위 바꿀 수 없음
 - 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홈페이지 지원서입력 화면에서 양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연구활동계획서 :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내용과 향후 발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자기소개서 : 주요 연구경력 및 업적, 근무·강의경력, 저술활동, 수상경력, 특허 등을 포함하여 기재
- (4) 유의사항
 - 가. 인터넷 제출사항은 부속서류 접수 시 접수담당자가 출력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나. 접수 담당자 출력 이후 변경사항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출력 전까지는 재접속하여 입력내용 수정 보완 가능)
 - 다. 인터넷 접수 시 작업저장, 제출, 제출확인 버튼을 모두 클릭하여 "접수번호가 생성"되어야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며 온라인 입력이 완료된 지원자만 부속서류 접수 가능

2. 부속서류 제출 - 인터넷 임용 지원 접수한 실적 증빙자료

- (1) 접수기간 : 2015. 11. 18(수) 10:00 ~ 11. 19(목) 17:00(한국시간 기준)
 - * 점심시간 : 12:00 ~ 13:00
 - ** 우편접수의 경우 2015. 11. 12(목)부터 가능
- (2) 접수방법 : 방문(대리인 가능) 또는 우편 접수(제출)
 - 가. 방문접수 : 대강당
 - 나. 우편접수
 - ① 우편 제출시 봉투 겉면에 '교수초빙 지원 부속서류'라는 문구와 지원학과, 지원분야, 지원자의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표기
 - ② 부속서류 우편 접수처

1. 한글 : (130-74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3층 교무과 교수신규초빙 담당자
Tel : 02-6490-6106 Fax : 02-6490-6149
2. 영문 : Division of Academic Affairs, University Center 305, University of Seoul,
Seouliripdae-ro 163, Dongdaemun-gu, Seoul 130-743, Korea
Tel : +82-2-6490-6106 Fax : +82-2-6490-6149

※ 우편으로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시(11. 19. 17:00)까지 서류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에 따른 문제발생 시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아니함

(3) 제출 목록

가. 연구실적물 각 1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2. 11. 20 ~ 2015. 11. 19)에 발표한 연구실적(온라인 게재물은 DOI(디지털 콘텐츠 식별번호)가 부여된 논문에 한함)
- 인터넷 접수 시 입력한 모든 연구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실적물을(별쇄본 포함)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게재예정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연구 실적물은 임용후 승진, 재임용 및 업적평가에 활용 불가함.

나. 최종학위논문 1부.

다.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석.박사졸업증명서가 없는 경우 석.박사학위기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아 사본 제출 가능
- 영어 이외에 외국어로 된 경력증명서는 국문번역본(본인 서명 명기)하여야 함

라. 경력증명서(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증빙자료) 각 1부.

- 지원서 상의 전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영어 이외에 외국어로 된 경력증명서는 국문번역본(본인 서명 명기)하여야 함

마. 추천서

-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개인별 2부 이내로 함
- 추천서는 이메일 제출(newkyomu@uos.ac.kr)로 가능하며 접수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시에는 메일 내용에 지원학부.과 지원자 성명을 기재하고 추천자의 서명이 들어있는 pdf파일을 첨부하여 송부

E. 유의사항

1. 결격처리 등

- ① 자격기준 미충족자가 지원한 경우 결격 처리
- ② 임용지원서 각 항목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했을 시에는 미접수 처리될 수 있음
- ③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결격처리 하며, 본교 교원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④ 전공이 2분야 이상 부합해도 이중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 하는 경우 전 분야 결격처리

2. 임용 관련

- 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본교 임용관련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최종합격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제 임용.
- ③ 임용예정일 : 2016년 3월 1일

3. 기타 유의사항

- ① 신입교원 채용과 관련된 제반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②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신규임용규정에 따름
-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로 문의 바람
(신규 교수초빙 문의 : ☎ 02) 6490-6106, 교무과 02) 6490-6105)
FAX 02-6490-6149 / E-mail : newkyomu@uos.ac.kr)

<붙임> : 임용지원서 등 관련 지원양식

담당자	교무처	전자우편	newkyomu@uos.ac.kr
접수	전화	팩스	
및	주소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3층 교무과 교수	
문의	신규초빙 담당자		
약도			

관 련 정 보

☞ 기관 홈페이지 : 서울시립대학교

☞ 부서 홈페이지 : 없음

☞ 제출서류양식 : 임용지원서 등 관련 지원양식

☞ 관련 홈페이지 없음



주의 :

본 메뉴의 정보는 입력오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모집 마감 1년후부터는 공고 열람이 제한되니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사전에 출력바랍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 복사 또는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사이트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도움말](#)

Copyright © 1996-2015. 하이브레인넷 All rights reserved.